

근로/노동 - 요양보호사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로 5년 정도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장기근속 장려금 수급조건에 해당할까요?

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 장기근속 장려금 수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월별 근무시간 요건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2.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3.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봄)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월별 근무시간 요건	지급금액
위 1.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14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월 160,000원
	84개월 이상	월 180,000원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11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월 130,000원
	84개월 이상	월 150,000원